

2013년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차별화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을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예산 및 시장수 : 10억원, 50개 시장 내외

□ 지원내용 및 유형

- 배송인프라(차량, 오토바이, 콜센터 등)가 구축된 전통시장에 맞벌이 가정, 초보 주부 등을 위해 장보기 및 배송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 차량은 렌트, 리스 등이 가능하며, 차량은 반드시 영업용에 한함

- 배송인프라 구축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별로 지원하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2년 졸업제 시행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유형 >

지원 유형		배송인프라 구축시장	배송인프라 미구축시장
유형1	장보기 및 배송	○	×
유형2	배송	○	×
유형3	장보기	○	○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시장은 제외(중복지원 불가)하되,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지원규모는 신청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지원한도 및 조건

○ 한도 및 조건 : 시장당 국비 20백만원 이내(국비 90%, 자부담 10%)

* 정부지원금은 배송인력 등 순수인건비로만 지원하고, 퇴직금, 출장비, 4대 보험료 등은 자체(상인회 등) 부담

(유형 1)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단위 : 천원)

구 분			월 기준			총 지원금액(6개월)		
지원내용 (근무시간)	인원	단가 (월)	총 예산	정부 (90%)	상인회 (10%)	총 예산	정부 (90%)	상인회 (10%)
인 건 비	장보기 도우미(4시간)	3명 (1인)	470	1,269	141	8,460	7,614	846
	배송 직원 (8시간)	1명 (1인)	1,200	1,080	120	7,200	6,480	720
	콜센터 직원 (8시간)	1명 (1인)	940	846	94	5,640	5,076	564
기타	홍보, 차량보험료 등		153	138	15	918	827	91
계			3,703	3,333	370	22,218	19,997	2,221

(유형 2) 배송 서비스

(단위 : 천원)

구 분			월 기준			총 지원금액(6개월)		
지원내용 (근무시간)	인원	단가 (월)	총 예산	정부 (90%)	상인회 (10%)	총 예산	정부 (90%)	상인회 (10%)
인 건 비	배송 직원 (8시간)	2명 (1인)	1,200	2,400	240	14,400	12,960	1,440
	콜센터 직원 (8시간)	1명 (1인)	940	940	94	5,640	5,076	564
기타	홍보, 차량보험료 등 (유형 1의 75%)		115	104	11	690	621	69
계			3,455	3,110	345	20,730	18,657	2,073

(유형 3) 장보기 서비스

(단위 : 천원)

구 분			월 기준			총 지원금액(6개월)		
지원내용 (근무시간)	인원	단가 (월)	총 예산	정부 (90%)	상인회 (10%)	총 예산	정부 (90%)	상인회 (10%)
인 건 비	장보기 도우미(4시간)	5명 (1인)	470	2,350	235	14,100	12,690	1,410
	콜센터 직원 (8시간)	1명 (1인)	940	940	94	5,640	5,076	564
기타	홍보 등(유형 1의 50%)		77	69	8	462	416	46
계			3,367	3,030	337	20,202	18,182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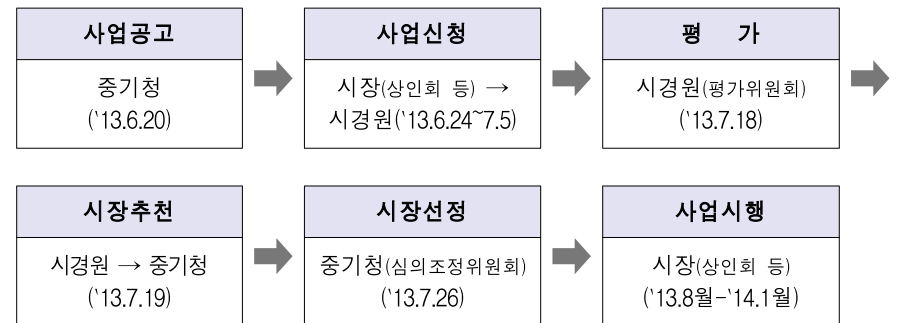
○ 운영인력(배송, 콜센터, 장보기)의 관리

- 상인회 등이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하되, 부정한 사업비 집행* 등이 적발될 경우 사업중단 및 사업비 환수

* 사업비 유용 및 횡령, 비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부적절한 집행

2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내용 : 현장평가(50점), 사업계획평가(50점)
- 평가기준
 - (현장평가) 배송인프라(센터, 차량 등) 구축 현황, 대형마트와의 경쟁 심화 정도, 주거 밀집지역 인접성 등
 - (사업계획평가) 자생력, 상인회 추진역량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평가
- * (우대) 자체부담 10% 이상, 자체 수익모델이나 정부지원 이후 자체 운영 가능 등 자생력이 있는 시장은 평가시 가점 부여

3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인편, 팩스
- 신청 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대 상 사 업	신 청 기 간	신 청 절 차
시장경영진흥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2013. 6. 20 ~ 7. 5	시장(상인회 등) → 시경원

4 향후 일정

- '13. 6. 20 : 사업공고
- '13. 6. 24 ~ 7. 5 : 신청 및 접수
- '13. 7. 18 : 평가(현장평가 및 사업계획평가)
- '13. 7. 26 : 50개 내외 선정
- '13. 8월 ~ '14. 1월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개시
- '14. 1월 : 1차년도 사업 완료
- '14. 2월 : 사업비 정산

5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담 당 사 업 명
중소기업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042-481-4335, 4562	042-472-7935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시장경영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14층)	02-2174-4351~7	02-2174-4397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 자세한 지원절차·공고내용 및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알림 소식/새소식/공지사항” 및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www.sijang.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계획

구분	내용																
집행기관	○ 시장경영진흥원																
지원예산	○ 10억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중																
지원내용	○ 배송인프라(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가 구축된 시장의 경우,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지원이 가능하며, 배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시장의 경우는 장보기 서비스만 지원 가능																
지원조건	○ 국비 90%, 상인 10%(국비는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상인조직 활동이 활발한 곳																
지원방법	○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방법 상이																
국비지원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 <th>국비지원한도</th> <th>상인회 자부담</th> <th>총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유형1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td> <td>시장당 19,997천원</td> <td>시장당 2,221천원</td> <td>시장당 22,218천원</td> </tr> <tr> <td>유형2 배송 서비스</td> <td>시장당 18,657천원</td> <td>시장당 2,073천원</td> <td>시장당 20,730천원</td> </tr> <tr> <td>유형3 장보기 서비스</td> <td>시장당 18,182천원</td> <td>시장당 2,020천원</td> <td>시장당 20,202천원</td> </tr> </tbody> </table>	사업명	국비지원한도	상인회 자부담	총금액	유형1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시장당 19,997천원	시장당 2,221천원	시장당 22,218천원	유형2 배송 서비스	시장당 18,657천원	시장당 2,073천원	시장당 20,730천원	유형3 장보기 서비스	시장당 18,182천원	시장당 2,020천원	시장당 20,202천원
	사업명	국비지원한도	상인회 자부담	총금액													
	유형1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시장당 19,997천원	시장당 2,221천원	시장당 22,218천원													
	유형2 배송 서비스	시장당 18,657천원	시장당 2,073천원	시장당 20,730천원													
유형3 장보기 서비스	시장당 18,182천원	시장당 2,020천원	시장당 20,202천원														
* 세부내역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절차 시장(상인회 등) → 시장경영진흥원(신청) →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장 추천(시장경영진흥원) → 중기청(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장 선정) → 중기청(선정 및 결과통보)																
구비서류	○ [별지2], <별지2-1>, <별지2-2>																

[별지2] 시장(상인회 등) 작성용

2013년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신청서

시장정보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input type="checkbox"/> 상점가 <input type="checkbox"/> 활성화구역		
	소재지			
	점포수	영업점포()개 + 빈점포()개 = 총점포()개 노점()개 (상인회원인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업자등록()개, 카드가맹()개, 온누리상품권 가맹()개		
	종사자수	상인()명 + 종업원()명 + 노점()명 = 총()명		
	상인회가입률	상인()명 중 회원가입()명 = 가입률()%		
	상인회비율	회원점포()개 중 납부점포()개 = 납부률()%		
	배송인프라 구축 현황	영업용 배송차량 보유()대 배송오토바이 보유()대		
지자체 지원 현황				
상인회 정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성명		핸드폰	
	실무자성명		핸드폰	
신청사업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해당유형에 O표 하세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유형1)	배송 서비스 (유형2)	장보기 서비스 (유형3)	
위와 같이 『13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시장경영진흥원장 귀하				
첨부양식 : <별지2-1>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요약) <별지2-2> 전통시장 배송인프라 구축 증빙 자료(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한함)				
제출서류 : 1.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3.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4. 배송차량 또는 오토바이의 차량 등록증 사본 1부(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한함)				
※ 시장 입증서류 및 상인회 입증 서류를 기존에 제출하여 사업에 참여했고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				

<별지 2-1>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용

2013년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요약)

시장명			
1. 사업개요			
사업명	※ 유형별 사업명 기재(ex: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배송서비스, 장보기 서비스 중 택1)		
사업목적	※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시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사업내용	※ 지원 인력 활용 추진방안을 상세히 기술		
소요예산 (단위: 원)	총사업비	국비	자부담
	※ 소요예산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작성 요망		
추진일정	※ 단위사업별로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산출근거	※ 산출근거는 공고문의 지원규모를 참고하여 작성 ※ 예시: 배송서비스 신청시, 1) 배송인력:0명, 월 인건비: 0000원, 총 금액: 0000원-국비 000원, 자부담: 0000원 2) 콜센터인력:0명, 월 인건비: 0000원, 총 금액: 0000원-국비 000원, 자부담: 0000원 3) 홍보비 차량 보험료 등: 사용금액 및 세부내역 4) 필요시 기타세부 내역 기술		

<별지 2-2> 배송인프라 구축 증빙 자료 양식(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한함)

배송인프라 구축 증빙 자료 양식

사진	사진
배송 서비스 차량 또는 오토바이 사진	배송 서비스 차량 또는 오토바이 사진
사진	사진
배송 서비스 차량 또는 오토바이 사진	콜 센터 사진(있는 경우만 첨부)

* 차량의 렌트·리스 등의 경우 선정 후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 지급

2013년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시장명 :

2013.

대표자(상인회 등) : 인

* 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에 제시한 양식은 예시안임으로 개별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함

1. 시장 고유의 특성

상세정보

○ 품목비율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소매업	합계
점포수									
비율(%)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의 특성(강점)

○

배송인프라 시설 현황

○

배송서비스와 관련된 지자체 지원 현황

○

2. 사업개요(자생력, 대형마트와의 경쟁, 주거 밀집, 추진력 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임을 감안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람)

사업의 목표

-
-

사업추진 전략(상세히)

-
-
-

사업종료 후 향후 운영방안(상세히)

-
-
-

그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활동내역

-
-
-